

첨부 2 결격사유

【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8. 기타 사회통념상 본 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